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 마련 〉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66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 마련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2024. 8. 8.
3. 회부연월일: 2024. 8. 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시·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 Ⅲ. 검토의견

#### □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 마련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br>~ ③ (생략)<br>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1. ~ 11. (생략)<br><u>&lt;신설&gt;</u><br><br>12.·13. (생략)<br><br>⑤ ~ ⑧ (생략)<br><u>&lt;신설&gt;</u> |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br>~ ③ (현행과 같음)<br>④ -----<br>-----.<br>1. ~ 11. (현행과 같음)<br>12. <u>제19조의4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br>13.·14. (현행 제12호 및 제13호와 같음)<br>⑤ ~ ⑧ (현행과 같음)<br><u>제19조의4(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학부모교육(자녀교육 역량 강화, 교육활동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u> |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원을 위하여 진흥원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실시 및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시·도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학부모교육의 실시·운영을 위하여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학부모지원센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및 지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부모교육과 이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 지원관 내 학부모정책과 주관 하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 내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내 지역학부모지원센터에서, 출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하고 있음.<sup>1)</sup>

교육부에서 학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기타 지원을 하는 근거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sup>2)</sup>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진흥원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의 지역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업무 수행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1) [2024년도 학부모 지원 사업 추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명                 | 예산액   |
|-------|---------------------|-------|
| 출연금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인건비 및 제경비 | 133   |
|       |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 운영 등 | 64    |
|       | 소계                  | 197   |
| 특별교부금 | 학부모 지원 기반 강화        | 1,615 |
|       | 학부모 소통 강화           | 1,875 |
|       | 소계                  | 3,490 |
| 합계    |                     | 3,687 |

자료: 교육부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책임교육정책실) ① 책임교육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5.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 개선

66.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⑱ 학부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2.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3.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지원

5.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6. 학부모단체와의 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8. 교육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안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할 경우, 보다 명확한 근거하에 지속적·체계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19조의4제1항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에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학부모교육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등과 같이 상세한 내용을 규정<sup>3)</sup>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교육부: 신중 검토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학부모(또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을 ‘학교에 의견 제시, 학생 교육·지도에 협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학부모를 ‘교육의 대상’보다 학교 교육을 위한 협력의 주체로 보고 있으며,
- 현행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진학 지원, 학교정보 제공, 정책 의견수렴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이에 ‘평생교육’보다 ‘학교교육’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 중(「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므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